



국민건강보험공단



수신자 사업장 대표자(건강검진 담당자)

제목 2018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실시안내 및 대상자 명단 통보

1.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2018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오니 근로자들이 편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, **빠른 시일 내에 건강검진 실시 안내를 사내공지** 바랍니다.
3. 검진대상자 명단 확인 후 근무구분 또는 대상자 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**건강검진 대상자(추가·제외)신청서**를 작성하여 **사업장 관할지사**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(건강진단)에 의한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 안내사항 >

- ① 대상자명단에 근무구분이 **공란인** 대상자는 **11월30일 이전에** 근무구분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➔ 신고하지 않은 경우 『**사무직**』으로 간주하여 **2019년 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**
- ② **맞춤형 일반건강검진으로!**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되었습니다.
 - ➔ 일반건강검진 목표질환을 공통질환과 성·연령별 질환으로 구분하고 목표질환에 따라 검진항목 및 주기를 조정하였습니다.
- ③ **확진검사**로 더 **간결하게!** 검진과 치료의 연계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.
 - ➔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·당뇨병 질환의심자는 병·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.
- ④ 사무직 중 **깎수연도 출생자**는 전년도 수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 - ➔ 2018년도부터 **2년 주기 검진항목은 출생연도(깎, 홀수) 기준이 모두 적용**되었습니다. (다만, 2018년도에 한하여, 홀수연도 출생자 중 2년 주기가 도래한 사무직의 경우도 일반검진대상 적용)
- ⑤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는 사업장에서 검진대상자로 등록 요청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⑥ **4분기**에는 전체수검자의 40%가 검진을 실시하여 **검진기관이 매우 혼잡**하오니 근로자들이 좀 더 질 좋은 검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**가급적 상반기내에** 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2018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명단 1부.
2. 2018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실시안내(책자) 1부. 끝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“투명하고 책임지는 업무처리, 부패 ZERO 청렴공단”

2018년 사업장 건강검진 실시안내(요약)

검진대상	· 일반건강검진 : 비사무직(매년), 사무직(2년에 1회) ※ 2018년부터 사무직의 일반검진은 출생연도(깎, 홀수)를 기준으로 검진대상시기 조정(단,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검진대상 적용) · 암검진 : 출생연도(깎·홀수)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					
	암 종	위 암	간 암	대장암	유방암	자궁경부암
	연 령	만40세 이상	만40세 이상 고위험군	만50세 이상	만40세 이상 여성	만20세 이상 여성
	검진주기	2년	6개월	1년	2년	2년
	※ 간암·대장암 산정특례자 또는 국가암검진 중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을 유예(본인 희망시에는 추가 등록 가능)					
검진기간	· 일반건강검진(암검진 포함) : 2018.12.31일 까지 · 대장암 분변검사결과 “양성”자, 위조영촬영결과 “암의심”자 의 2단계 암검진 : 2019.1.31. 까지					
검진비용	· 일반건강검진 : 공단 전액부담 · 암검진 : 공단 90%, 수검자 10%(단,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 은 공단 전액부담) ※ 국가암검진대상자(통보처 기재자)의 본인부담금 10%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					
실시절차	공단 ①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송부 ▶②-2 대상자 수정사항 처리 후 대상자 명단 재송부	사업장 ② 사업장은 대상자 명단 확인 후 건강검진 실시 ▶②-1 대상자 변경 이 필요한 경우 “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(추가·제외)신청서” 관할지사로 제출 ④ 일반검진결과 고혈압·당뇨병 질환의심자는 확진검사까지 받도록 안내	검진기관 ③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 실시 ▶ 사업주가 발급한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및 신분증 지참	※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검진기관에 검진대상자 명단 제공 불가 [검진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검진시 검진대상자 본인이 직접(문진표 작성 등) 검진기관에 제공만 가능]		
결과통보	·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부터 15일 이내 에 수검자가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 로 발송					
안내사항	· 검진대상자 명단에 근무구분이 공란인 대상자는 11월30일까지 근무구분 신고(기한 내 미신고건은 사무직으로 간주하여 다음연도 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) · 신규입사자와 전년도미수검자는 사업장에서 실시절차 ②-1 처리후 검진을 받을 수 있음 · 사무직 전체 일반검진시기 출생연도 적용으로, 깎수연도 출생자는 전년도 수검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검진 실시 · 암검진은 대상자 주소지로 암검진표(간암도 표기) 개별 송부함. · 사업장에서 국가검진을 포함하여 추가 종합검진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국가건강검진이 포함된 종합검진임을 반드시 안내하여 이중검진 방지 ·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변경신청서 작성시 개별로 국가건강검진을 이미 받은 근로자를 “종합검진실시”사유로 검진대상자 취소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					
유의사항	· 검진전날 저녁 9시 이후에 금식(단, 대장암(분변검사)만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없음) ·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후 제출 · 여성의 경우 생리 중 또는 생리 전·후 2~3일은 건강검진을 피하시기 바람					
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	· 지원대상 : 2018년 암검진비 지원 대상자 중 국가암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을 확진 받은 자 ·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· 신청 및 지급기관 : 주소지 관할 보건소					

※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휴일도 실시하는 검진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(검진기관 :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/ 자주찾는메뉴 / 병원 및 검진기관/검진기관 찾기(휴일검진기관 “/” 선택 후 검색)